

#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[이경애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8-17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5. .  
발 의 자 : 이경애 의원 등 9명

### 개정이유

- 위탁계약기간에 위탁자의 연령의 기준에 조정하고자함.

### 주요내용

- 원장의 잔여임기 및 위탁기간을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로 조정함(안 제23조 제3항)

#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- 현행 안산시영유아보육 조례

#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#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###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(부서 검토의견)

## 【붙임 1】

#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5년으로 하되”를 “ 5년으로 하되, 원장이 만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, 위탁기간을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이경애 의원 (행정 3569) 대표발의

## 【붙임 2】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 <u>하되</u>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 일      때에는 그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전      학년도의 종료일로 하여 위탁기간을      조정할 수 있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     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. 단,     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p>	<p>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5년으로      하되, <u>원장이 만65세까지 남은 임기</u>  <u>가 5년 미만인 경우, 위탁기간을 3년</u>  <u>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</u>  <u>있고, 위탁기간</u>  -----  -----  -----</p>
<p>④·⑤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⑥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     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      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      하여야 한다.</p>	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</u>  <u>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</u>  <u>에 참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<u>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</u>  <u>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</u>  <u>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</u>  <u>야 한다.</u></p>